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281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피 고 1. 유한회사 B

특별대리인 C

2. D

변 론 종 결 2022. 7. 15.

판 결 선 고 2022. 9. 2.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92,840원 및 그 중 131,964,545원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은 2021. 12. 13.까지, 피고 D은 2021. 10. 26.까지 각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망 E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4. 5. 접수 제349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2. 18.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G조성사업(1차) 중 토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3억 6,350만 원, 보험기간 2020. 12. 18.부터 2021. 2. 13.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 E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21. 2. 13. F와 체결한 토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1. 7. 22.경 F에 보험금 131,964,545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비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2021. 10. 14.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액은 134,792,840원(= 보험금 131,954,545원 + 2021. 7. 23.부터 2021. 10. 14.까지 미수이자 2,407,895원 + 채권보전비용 등 미수금 420,400원)이다.

라. 망 E은 2021. 4. 2.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4. 5. 접수 제3497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E은 2021. 4. 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그의 처 H, 자녀들인 I, 피고 D이 있었는데, H, I는 전주지방법원 2021느단55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D이 전주지방법원 2021느단55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 망 E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34,792,840원 및 그 중 보험금 131,964,545원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2. 13.까지,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0. 26.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과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회사 및 망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원고와 피고 회사 및 망 E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F과 토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구상권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21. 7. 22.경 F에 보험금 131,964,545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 및 망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망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9, 14의 각 기재와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 E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1억 2,2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예금채권 17,260,230원(기업은행 1,038원, J은행 1,549,687원, K은행 14,104,252원, L조합 5,614원, M조합 638원, N조합 139,415원, 우체국 181,119원, O조합 1,269,540원, P조합 8,927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 시가 미상의 2007년식 오피러스 승용차 1대, 2007년식 에쿠스 승용차 1대, 2015년식 굴삭기 1대, 1992년식 불도저 1대를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외에 M조합대출금채무 5,900만 원, J은행 보증채무 6,500만 원, 우체국 대출금채무 330만 원, O조합대출금채무 35,487,213원, Q 보증채무 61,474,630원, 국세청 부가가치세채무 421,08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초과상태인 망 E이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 E의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3) 피고 D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망 E이 암 투병 과정에서 병원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망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망 E 및 피고 D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고 D이 2021. 4. 2. 망 E 명의의 J은행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망 E의 사해의사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 D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망 E을 단독으로 상속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이 한정승인을 함에 따라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D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환원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기로 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익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15층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제1층  호 59.8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 32022.5㎡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2022.5분의 41.807

- 이 상 -

